[별지 제21호의7서식] <신설 2020. 11. 27.>

#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[ ] 지정 [ ] 변경지정 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 | 지정 50일(변경지정인 경우 10일) |
|---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기관명 |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|
| | 대표자 성명 | 전화번호 |
| | 사업장 소재지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지정 내용 | 검사대상 시설의 종류 | |
| | 기술인력 | |
| | 시설 | |
| | 장비 | |

| 변경 내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| | |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 ] 제41조의4제1항 [ ] 제41조의5제2항 에 따라

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[ ] 지정 [ ]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국립환경과학원장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지정신청의 경우<br>가.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<br>나.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·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<br>다.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<br>(1) 업무수행 절차·방법 등 운영관리계획<br>(2) 시설·장비의 유지·관리계획[정도관리(精度管理)계획을 포함한다]<br>라.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<br>2. 변경지정신청의 경우<br>가.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<br>나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| 1. 국가기술자격증<br>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| |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 처리절차

| 신청서 작성 | → | 접수 | → | 검토 (서류 및 현장) | → | 결재 | → | 지정서 발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인 | | 국립환경과학원 | | 국립환경과학원 | | 국립환경과학원 | | 국립환경과학원 |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